K-ICT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 NIA 한국정보화진흥원

#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

김 승 환 인하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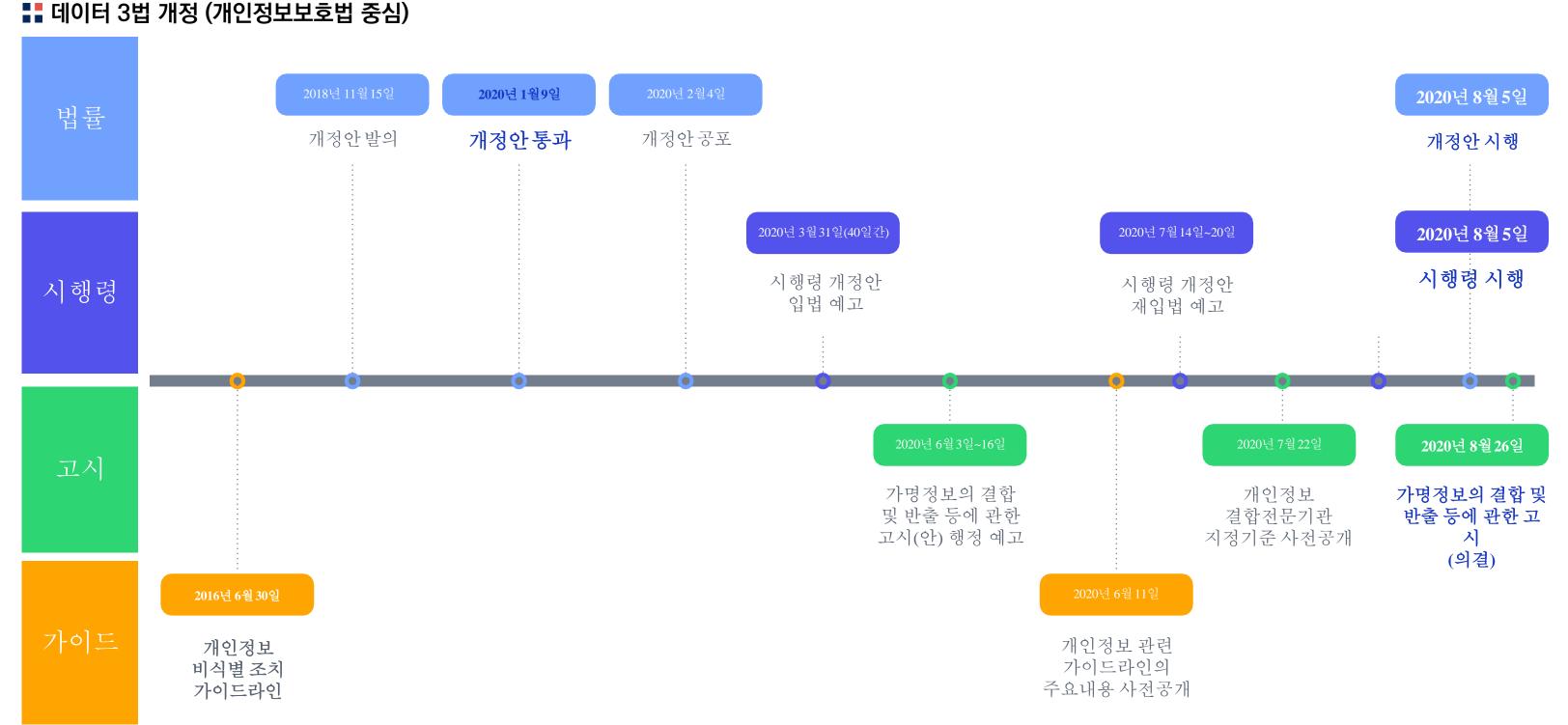
swkim4610@inha.ac.kr

이 노트는 라곰 소프트 오형섭 이사 강의자료를 편집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.

#### 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처리

# 1. 개인정보보호법과 대한민국 법(法)규범

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

####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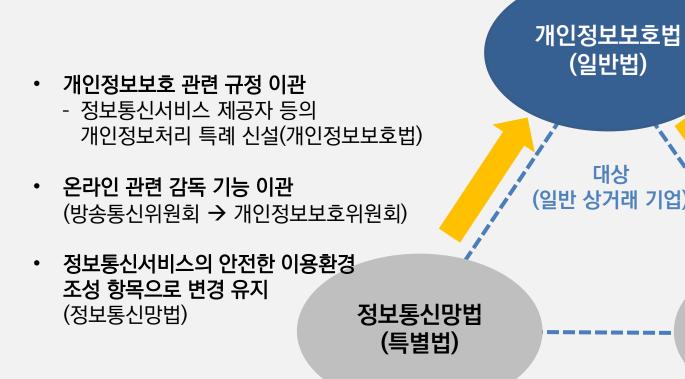
#### **!!** 데이터 3법



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의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2

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 유사.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



-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
  -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
  -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가능
  - 가명정보의 결합

신용정보법

(특별법)

**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** (감독기구의 일원화)

- 빅데이터 분석/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
  - 가명정보의 정의 구체화: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), 연구(산업적 연구)
- 신용정보산업 규제 체계 정비: 비금융전문 CB, 개인사업자 CB
- 본인신용정보관리업(MyData) 도입
-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: 정보활용 등급제, 개인신용정보 이동권

#### ▋ 데이터 3법 주요내용



####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

■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,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<mark>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</mark> 명확화

# 2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<u>가명정보 개념을 도입</u> 및 <u>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</u>

- 가명정보(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)는 통계작성·과학적 연구·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없이 적절할 안전조치하에 이용 가능
-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 허용
- 3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
-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\*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
  - →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전체 매출액의 3%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
  - \* 가명정보의 복원을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접근통제, 제3자 제공 금지,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 생성시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/파기

#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<u>유사·중복 규정을 정비 및 추진체계 효율화</u>

-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
-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로 EU 적정성 평가 승인 예상,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 별도 절차 면제

#### K-ICT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

#### ▶ 용어 정의

#### 개인정보

-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)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 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- <u>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,</u>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

#### 가명정보

■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) **가명처리함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**·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가명정보)

#### 익명정보

■ (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)

시간・비용・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

#### 가명처리

■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의2) **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** 

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 3. 개인정보보호법/신용정보법 및 시행령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

####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-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-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**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**되는 경우
- 6. **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**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####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
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**익명처리**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**가명에 의하여 처리**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2. 4.〉

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

#### ▶ 개인정보 보호 원칙

####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<mark>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</mark>하게 수집하여 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<mark>안전하게</mark>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<mark>익명처리</mark>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<mark>가명에 의하여 처리</mark>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**〈개정 2020. 2. 4.〉**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# **#** 개인정보보호법

####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(개인정보보호법)

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28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 제한)**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<mark>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</mark>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<mark>전문기관</mark>이 수행한다.

-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<mark>결합된 정보를 반출</mark>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<mark>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</mark>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,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 · 절차, 관리 · 감독,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 ·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8조의4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mark>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</mark> 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<mark>록을 작성하여 보관</mark>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.

**제28조의6(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)**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8조의7(적용범위)** 가명정보는 제20조, <u>제21조</u>, 제27조, 제34조제1항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의3, 제39조의4,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<mark>규정을 적용하지</mark> 아니한다. \*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(2020.8.4 신설) : 제29조의2~제29조의6

#### 제29조의2(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)

-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(이하 "결합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"결합신청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- 1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
- 2.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
- 3.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4.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서를 제출받은 <u>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결합</u>해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 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③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<mark>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</mark>하려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**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**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<u>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</u>한 뒤 <u>결합전문기관의 승인</u>을 받아야 한다.
-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<del>출을</del> 승인해야 한다.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<del>출</del>을 승인하기 위 하여 <u>반출심사위원회</u>를 구성해야 한다.
- 1.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
- 2.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
- 3.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
-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,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#### K-ICT 빅데이터센터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### 제29조의5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<u>가명정보</u>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<u>추가 정보</u>(이하 이 조에서 "추가 정보"라 한다)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<u>안전성 확보 조치</u>를 해야 한다.
- 1.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<u>안전성 확보 조치</u>
- 2.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의 <mark>분리 보관</mark>. 다만, **추가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파기**해야 한다.
- 3.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<u>접근 권한의 분리</u>. 다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·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<u>가명정보 처리의 목적</u>
- 2.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
- 3. <u>가명정보의 이용내역</u>
- 4. <u>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</u>
- 5.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**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**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### 제29조의6(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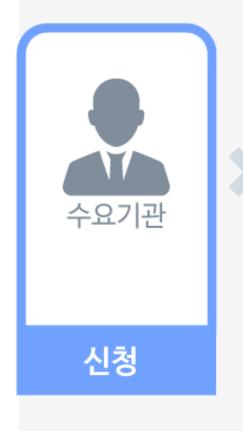
-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<mark>매출액</mark>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<u>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</u>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,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-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
- 2.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
-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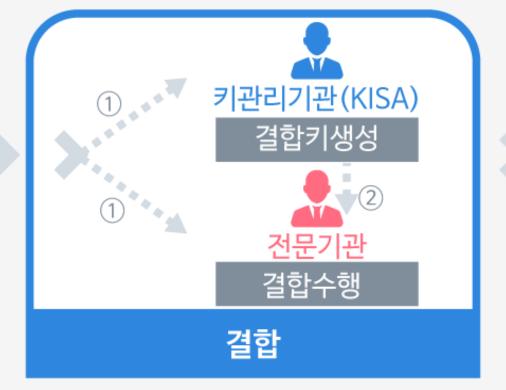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### 2.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

####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

• 신청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하며, 전문기관의 승인 후 반출하여 분석 가능







####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### 3.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####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신설

- 가명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<u>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필요 (법 제28조의4)
  - → 추가정보의 분리 및 보관, 가명정보 처리 내용의 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방법 마련

# 안전조치 의무 •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→ 내부관리계획, 개인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, 암호화, 접속기록 보관 및 위/변조 방지, 보안프로그램 등 분리 보관 •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 분리 •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

#### 기록 보관

-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
-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
- 가명정보의 이용내역
-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

#### 개인정보 가명·익명조치기술 전문교육

#### **!!**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
# 3. 개인정보보호법/신용정보법 및 시행령

#### 4. 생체인식정보 및 인종 · 민족정보 신설

민감정보 범위 확대

#### 기존 민감정보

- 사상 · 신념, 노동조합 · 정당의 가입 · 탈퇴
-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
- 유전정보, 범죄경력정보

#### 추가 신설되는 민감정보

생체 인식 정보

개인의 신체적, 생리적,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

인종 민족 정보

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

#### **!!! 신용정보법 시행령**

#### 1. 신용정보에 관한 데이터 결합

#### 데이터전문기관

-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,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
- 데이터전문기관은 <u>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</u> 하고, 지정요건, 지정절차,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

####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요건

- 민법상 비영리 법인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,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·조직,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
- 신용정보의 유출 등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

#### 데이터전문기관의 위험관리체계

-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
-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아니할 것
-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

#### **!!** 신용정보법 시행령

#### 1. 신용정보에 관한 데이터 결합

#### 데이터 결합절차

•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<u>정보집합물의 결합, 제공, 보관 기준을 규정</u>하고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관련 사항의 주기적 보고 의무를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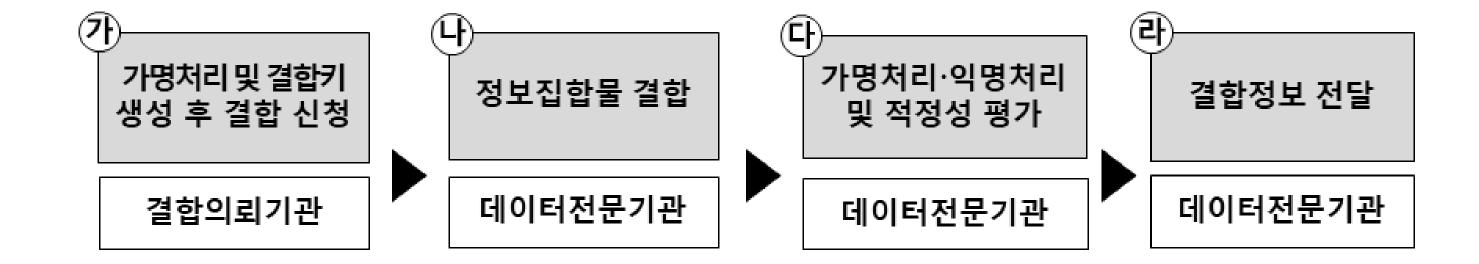
절차	주체	의무
결합의뢰	결합의뢰기관	①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
		②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은 <mark>결합키</mark> 로 대체
		* 결합키의 생성은 금융위가 정한 기준(신용정보업 감독규정)에 맞추어 <u>의뢰기관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</u>
		③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<mark>가명ㆍ익명처리</mark>
		④ <mark>암호화</mark>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
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	전문기관	① 데이터 결합 후 결합에 사용된 <mark>결합키는 삭제</mark> 또는 <mark>대체키</mark> 로 전환
		② 결합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<mark>적정성 평가</mark> 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전달
		③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<mark>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</mark>
		* 결합의뢰기관이 요청할 경우, 전문기관 내에서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
결합 이후	전문기관	① 결합 관련 사항 기록 · 관리
		② 결합 관련 기록은 연 1회 금융위 보고

#### **1. 신용정보법 시행령**

#### 1. 신용정보에 관한 데이터 결합

#### 데이터 결합절차

•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집합물의 결합, 제공, 보관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관련 사항의 주기적 보고 의무를 신설



#### **!!!** 신용정보법 시행령

#### 2. 신용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법적 근거 마련

#### 가명처리 행위규칙

• 신용정보회사등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<u>기술적 · 물리적 ·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· 시행</u>하고 <u>가명정보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파기 등</u>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

#### 가명처리 행위규칙

-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가명처리한 **개인신용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**하기 위한 사항
-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취급·조회 권한을 직급별·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
-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
- ·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

#### **!!** 신용정보법 시행령

#### 4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

####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

#### 전송대상 정보

- 1.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
- 2.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
- 3.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공적연금 등 보험료 납부 정보
- 4.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- 5. 그 밖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####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금지

- 1.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하여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3. 전송요구 시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
- 4.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
- 5.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

#### 신용정보 전송 등의 절차

- 1. 최근 5년 내 정보는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
- 2.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송요구권 행사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

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처리

# End of Document 감사합니다.

